

대구지방법원 2018. 5. 30 선고 2017가단13325 판결 [이득상환금등]

전 문

원고A

피고1. B

2. C

3. D

4. E

변론 종결2018. 5. 2.

판결 선고2018. 5. 30.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78,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7. 2. 16.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피고 C은 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7. 9. 22.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며,

다. 피고 C, D은 연대하여 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7. 9. 22.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며,

라. 피고 E는 8,48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7. 4. 19.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3. 12. 15. 피고 C의 연대보증 아래 피고 D에게 1,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원고는 피고 D을 비롯한 나머지 피고들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07가합2064호 이득상환금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7. 12. 4. 위 법원으로부터 주문 기재와 같은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피고 D은 2009. 8. 대구지방법원에 파산 및 면책신청(같은 법원 2009하단7388, 2009하면7388, 이하 '이 사건 파산 및 면책신청'이라 한다)을 하여 2010. 9. 위 법원에서 면책결정을 받고, 위 결정이 그 무렵 확정되었는데, 이 사건 파산 및 면책신청 시 채권자목록에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위 대여금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은 기재되지 않았다.

[인정근거]

피고 B, E: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C: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피고 D: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 B, C, E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 C, E는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주문 제1의 다. 항 기재와 같이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D의 주장 및 판단 가) 피고 D의 주장

피고 D이 2003. 12. 15. 원고로부터 1,000만 원을 빌린 것은 사실이나, 2009. 8. 31. 이 사건 파산 및 면책 신청 시 이 사건 채권을 잊고 있어 채권자목록에 이를 적지 못했다. 피고 D이 채권자목록에 이 사건 채권을 기재하지 않을 특별한 이유가 없고, 그 후 피고 D은 파산 및 면책결정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채권은 면책되었다.

나) 판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비록 그와 같이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더라도 위 법 조항에 정한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5다76500 판결 참조), 이와 달리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면 과실로 채권자목록에 이를 기재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법조항에서 정하는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 이와 같이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을 면책대상에서 제외한 이유는,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채권자가 있을 경우 그 채권자로서는 면책절차 내에서 면책신청에 대한 이의 등을 신청할 기회를 박탈당하게 될 뿐만 아니라 그에 따라 법 제564조에서 정한 면책불허가 사유에 대한 객관적 검증도 없이 면책이 허가,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할 책임에서 벗어나게 되므로, 위와 같은 절차 참여의 기회를 갖지 못한 채 불이익을 받게 되는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사실과 맞지 아니하는 채권자목록의 작성에 관한 채무자의 악의 여부는 위에서 본 법 제566조 제7호의 규정 취지를 충분히 감안하여, 누락된 채권의 내역과 채무자와의 관련성, 그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 누락의 경위에 관한 채무자의 소명과 객관적 자료와의 부합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단순히 채무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면책불허가 사유가 보이지 않는다는 등의 점만을 들어 채무자의 선의를 쉽게 인정하여서는 아니된다(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49083 판결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피고 D이 2003. 12. 15. 원고로부터 1,000만 원을 빌렸고, 이를 자인하는 점, ② 피고 D은 이 사건 채권을 변제하였다는

등 그 소멸 사유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도 하지 않는바, 피고 D이 이 사건 파산 및 면책신청 당시 이 사건 채권이 소멸한 것으로 오인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는 점, ③ 단순히 채무를 잊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파산 및 면책신청 당시 원고는 이 사건 채권의 존재를 알았으나 과실로 기재하지 아니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채권은 위 법 제566조 단서 제7호의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에 해당하여 이 사건 채권에 대하여는 피고 D의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하므로 피고 D의 면책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판사이현석